



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- 환경부 제공 -

환경부는 「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. 「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.

- 편집자 주 -

제품의 포장재질 ·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-386호(2024. 6. 24.) | 부령(일부개정) |

1. 개정이유

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기업(연매출 500억원 미만)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(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)

-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’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24. ~ 8. 5.)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령 제 호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제11호 본문 중 “제1호”를 “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가 제1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(사)한국포장협회 서적 안내



신·식품포장용 필름

「신·식품포장용 필름」-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」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, 플라스틱의 성질, 필름제조법, 필름의 성질,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, 식품보존성,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, 포장과 환경문제,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.

· 가격 : 20,000원



(사)한국포장협회 30년사

(사)한국포장협회 30년의 역사와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발행된 한국포장협회 30년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포장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조망한 한편의 책이다. 책은 발간사와 기념사 및 축사에 이어 크게 현황, 연혁화보, 통사, 부록으로 나뉘어 있다.

· 가격 : 50,000원